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5년 4월 1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86호

### 군산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지원하기위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군산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지원센터”라 한다)
2. 위 치 :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내)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군산시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 2호 가목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가공지원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라 함은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① 농업인등의 농산물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가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군산시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품품목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이행
4.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5. 농업인등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시설의 대부
6.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군산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
7.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①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가공지원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에 관련서류를 지도·감독하거나 점검한다.

**제6조 (시설의 사용)**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가공시설을 사용한다.

1. 농업인등이 군산시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2. 제4조 1항 제6호와 관련된 시험·연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않고 자가소비를 위한 시설사용
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지원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법령·규정·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사용료)** ① 시설의 사용료는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 산정된 사용료는 「군산시 농업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가공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시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사용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9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산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의 취소·사용중지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2조(시설의 대부)

- ① 시장은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제조·유통·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부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농업인들이 1년이상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서류등의 제출)** 사용자는 가공지원센터 운영과 관련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품의 반출 제한)** ① 시장은 가공지원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제품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과정중 품질기준을 이탈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료 미납
4. 가공지원센터 운영과 관계법령에 따른 요구서류 미제출
5.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5조(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과정·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법규의 모든 책임을 진다.
- ②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가입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자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 ① 사용자는 가공지원센터의 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
- ② 사용자는 제품의 제조과정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제품의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③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분실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실비보상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군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가공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전부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 신청서

신청인	업체명			연락처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신청사항	사용자명	외 명			
	사용장비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제품명(품목)	① 주원료명(kg)	② 가공유형	③ 비 고 ④ (판매용, 시험연구용)	

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상기와 같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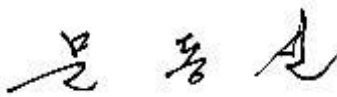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 ※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보상 한다 .
3. 사용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5.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sup>2</sup>)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5년 4월 1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87호

###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의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를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설에 입장하여 시설물, 전시품 또는 조망대를 관람·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천군민은 군산시민과 동일하게 입장료를 적용하고, 어린이(초등학생) 관람객은 무료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5항의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입장료 면제 및 감면”을 “입장료 면제”로 하고, 같은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관람시간”을 “관람 및 매표시간”으로 하고, 같은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설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표시간 : 10시00분 ~ 17시00분

2. 관람시간 : 10시00분 ~ 18시00분

[별표 1] 은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 는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①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에 -----.</p> <p>제7조(입장료 및 입장권) ① 시설에 입장하여 시설물, 전시품 또는 조망대를 관람·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p> <p>③ ~ ④ (생략)</p> <p>⑤ 제2항에 따른 -----.</p> <p>제8조(입장료 면제 및 감면) ----- -----.</p> <p>① ~ ④ (생략)</p> <p>⑤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입장자는 “별표 2”와 같이 징수한다.</p> <p>제9조(관람시간) ①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하절기(3월 1일 ~ 10월 31일) : 10시 00분 ~ 19시 00분</p> <p>2. 동절기(11월 1일 ~ 다음해 2월말) : 10시 00분 ~ 18시 00분</p> <p>별표 1 시설입장료 (제7조제2항과 관련)</p>	<p>제1조(목적) ①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p> <p>제7조(입장료 및 입장권) ① 시설에 입장하여 시설물, 전시품 또는 조망대를 관람·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천군민은 군산시민과 동일하게 입장료를 적용하고, 어린이(초등학생) 관람객은 무료로 한다.</p> <p>&lt;삭 제&gt;</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항에 따른 -----.</p> <p>제8조(입장료 면제) ----- -----.</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제9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시설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매표시간 : 10시 00분 ~ 17시 00분</p> <p>2. 관람시간 : 10시 00분 ~ 18시 00분</p> <p>별표 1 시설 입장료</p>

현 행				개 정 안					
(단위 : 원)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타지역	군산시	타지역	군산시	
성 인	2,000	1,000		성 인	2,000	1,000	1,000	500	
청 소 년 · 군 인	1,000	700		청 소 년 · 군 인	1,000	500	700	300	
어 린 이	500	300		어 린 이		무	료		
별표 2 시설입장료(감면) (제8조제5항 관 련)				<삭 제>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4월 1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88호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휠체어이용자”를 “버스등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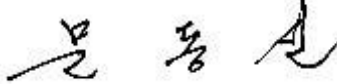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자 는 다음과 같다.	제5조(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 -----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 조	1. -----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는 <u>휠체어이용자</u>	-- <u>버스등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u>
2. <u>제1호의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 족과 보호자</u>	2. <u>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u>
<신 설>	3. <u>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u>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5년 4월 1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89호

##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에 다음과 같이 조항을 신설한다.

제8조의2(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8조(등·하교 교통지도)</b>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b>&lt;신 설&gt;</b></p>	<p><b>제8조(등·하교교통지도)</b> (현행과 같음)</p> <p><b>제8조의2(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b>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li> <li>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li> <li>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li> <li>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li> <li>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li> <li>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li> <li>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4월 1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90호

##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군산시민예술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하여 군산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은 군산시민예술촌(이하 “시민예술촌”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군산시 중정길 17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시설)** 시민예술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연장 및 극장
2. 공간연습실
3. 동아리방
4. 창작실
5. 전시실
6. 그 밖에 시민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4조(관리·운영)** ① 시민예술촌 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 한다.

② 시장은 시민예술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시민예술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활동(연습·전시·공연·발표)
2.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발굴·보급
3.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4. 시민예술촌 사용승인 및 사용료 부과
5. 영화상영
6. 그 밖에 시민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

**제6조(사용 범위)** 시민예술촌은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2. 그 밖의 시민예술촌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행사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시민예술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 신청서를,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팩스 및 전자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신청 내용이 제6조 각 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민예술촌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제8조(승인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 제1항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때
2. 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제9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시민예술촌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예술 공연을 위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이하 “할부제사용”이라 한다)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30(이하 “할부제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기본시설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할부제수입금액이 기본시설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시설 사용료를 납부한다.

③ 사용료는 사용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할부제 사용의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사용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④ 초과 사용료 가산은 1시간미만 사용 시는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일 때에는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초과 사용 시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및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 시는 당해 기준사용료(냉·난방 사용료 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⑥ 시장 또는 수탁자는 영화를 유료로 상영할 수 있고 관람료는 별표2와 같다.

**제10조(사용료 및 관람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100분의 30 감면 할 수 있다.
1.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③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여 관람료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람권 구매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3. 사용일 7일 전까지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4.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5.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30

**제12조(사용자의 관람권 발행)**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전시,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에게 유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은 좌석수 등 관람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고, 발매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 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은 좌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으며 관람권을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람권에는 관람자의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⑤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 한다.

**제13조(관람권의 검인)** ① 사용자가 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해 관람권을 발매코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관람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제14조(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5조(권리의 양도제한)** 시민예술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3장 위탁

**제16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시민예술촌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시장이 필요로 하는 행사가 있을시 시설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17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위탁운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산시민예술촌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문화예술업무담당 과장,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나 유관기관, 단체의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④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위탁협약)** 시장은 시민예술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의 대상 및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시민예술촌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규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시민예술촌 운영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시민예술촌 운영 및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필요한 시민예술촌 시설 및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시설관리)** ① 수탁자는 시설 내에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현 시설을 일부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수 및 시설비 전액을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 유지보호를 위하여 연중 시설물을 점검하고 파·훼손된 시설 또는 부실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수탁자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시설 감사)** ① 시장은 시민예술촌의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수시 또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탁인은 시장이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인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실천하여야 한다.

**제23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다음 연도의 시민예술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받은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승인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자가 위·수탁운영 협약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5조(보험가입 등)**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시설관리자 손해배상책임보험(시민예술촌 이용자 및 건물, 기계, 기구 등 재산에 대한) 및 시민예술촌 건물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에서 보험가입 후 해당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5. 5. 1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서식)

## 군산시민예술촌 시설(□사용□변경)신청서

신청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소속 기관단체명 (사업자번호)			연락처	E-MAIL			
	주소				L			
					H.P			
사용목적 (행사주요내용)								
참여인원		명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사용시설		공연장	1호실	2호실	3호실	4호실	5호실	6호실
부속시설		냉·난방사용 여부( □사용 □미사용)						
변경신청		변경 전 :			변경 후 :			
<h3>주의사항</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민예술촌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li> <li>2.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합니다.</li> <li>3. 사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li> <li>4. 사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li> <li>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li> </ol>								
<u>주의사항을 준수</u> 하는 조건으로 군산시민예술촌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년	월	일		
				①				
<h3>군산시장 귀하</h3>								

(별지2호서식)

## 군산시민예술촌 사용승인서

신청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소속 기관단체명 (사업자번호)							연락처	E-MAIL	
	주소							L		H.P
사용목적 (행사주요내용)										
참여인원		명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사용시설		공연장	1호실	2호실	3호실	4호실	5호실	6호실		
부속시설		냉·난방사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사용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사용료		계	시설 사용료			냉·난방 사용료				
<b>주의사항</b> 1. 시민예술촌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합니다. 3. 사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사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u>주의사항을 준수</u> 하는 조건으로 군산시민예술촌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b>군 산 시 장</b>										

(별지 제3호 서식)

# 관람권 검인 신청서

- 단체명 :
- 주소 :
- 대표자 :
- 행사명 :
- 사용시설 :
- 판매기간 :
- 관람권 판매 검인내역

구 분	검 인 요 청		비 고
	수 량	금 액	
관람권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군산시민예술촌 운영조례 제13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 검 인 부

일련 번호	검인 년월일	관람권의 종류 ( )	매수	검인자	확인자	비고
				성명	성명	

[별표 1]

1. 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구 분	규모	사용기준	평일	토·일·공휴일
공연장 및 극장 (공연 및 행사공간)	130석	1일 (09:00~22:00)	80,000	100,000
		오전 (09:00~12:00)	20,000	30,000
		오후 (13:00~17:00)	30,000	40,000
		야간 (18:00~22:00)	30,000	40,000
연습실 1 (단체공연 연습공간)	15명 이하	1시간	5,000	7,000
연습실 2 (음악, 국악 등)	10명 이하	1시간	5,000	7,000
연습실 3 (동아리방)	10명 이하	1시간	3,000	4,000
연습실 4 (동아리방)	10명 이하	1시간	3,000	4,000
연습실 5 (동아리방)	10명 이하	1시간	3,000	4,000
연습실 6 (창 작 실)	10명 이하	1시간	3,000	4,000
미 술 관 전 시 실	160m <sup>2</sup>	1일 (09:00~18:00)	10,000	15,000

2. 냉난방 사용료(제9조 관련)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공연장	1시간	5,000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공연장 외	1시간	2,000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별표 2]

3. 영화관람료(제9조 관련)

구 분	금액	비고
영화관람료	2,000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통 선*



2015년 4월 1일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585호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제2조의 절차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이·통장의 임기) ① 이·통장의 임기는 <u>2년</u>으로 하되, 제2조의 절차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제4조(이·통장의 임기) ① 이·통장의 임기는 <u>3년</u>으로 하되, ----- -----.</p>
<p>② 결원으로 보충된 이·통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이면 신규 임명된 것으로 한다.</p>	<p>② ----- ----- ----- -----.</p>
<p>③ 이·통장 중 임기 중에 해임·자진 사퇴로 퇴직한 자는 1년 이내 재임명할 수 없다.</p>	<p>③ ----- ----- -----.</p>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4월 1일

전라북도 군산시 훈령 제321호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1]

[본청]

계급	직렬	합계	직속부서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자치행정국계	총무과	기획예산과	새만금개발청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합	계	754	43	10	14	19	218	65	22	13	21	33	27	23	14		
정무직	계	1					1	1									
	소	1					1	1									
	정무	1					1	1									
일반직	계	745	42	9	14	19	216	63	22	13	21	33	27	23	14		
3급	소	1					1	1									
	행정	1					1	1									
4급	소	4					1	1									
	행정	1					1	1									
	행정·기술	3															
5급	소	32	3	1	1	1	8	1	1	1	1	1	1	1	1		
	행정	14	2	1	1		7	1	1		1	1	1	1	1		
	시설	2															
	행정·사회복지	4															
	행정·시설	7					1			1							
	행정·방송통신	1	1			1											
	행정·공업·환경	1															
	행정·녹지·시설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공업·보건·환경	1															
6급	소	163	9	2	3	4	44	8	6	5	5	6	6	5	3		
	행정	52	4	2	2		25	5	6	4	3			4	3		
	세무	3					3					3					
	전산	1	1			1											
	사회복지	2															

계급	직명	합계	직속부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새마을경제협력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계
6급	공업	1					1	1										
	녹지	2																
	해양수산	3																
	시설	16					1			1								
	시설관리	1																
	운전	1					1				1							
	기계운영	1					1				1							
	선박항해운영	1																
	사무운영	1																
	행정·세무	10					10					3	6	1				
	행정·전산	1	1			1												
	행정·사회복지	18																
	행정·공업	4																
	행정·녹지	1																
	행정·해양수산	2																
	행정·환경	2																
	행정·시설	19	1		1													
	행정·학예연구	1																
	전산·시설	1																
	전산·방송통신	2	2			2												
	공업·환경	2																
	공업·시설	2					1	1										
	농업·시설	1																
	녹지·시설	2																
	보건·식품위생	2																
	보건·환경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행정·녹지·시설	1																
	행정·보건·환경	1																

계급	직렬	합계	직속부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새마을경제협력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계
6급	행정·환경·시설	1																
	공업·보건·환경	1																
	행정·사회복지·보건·토	1																
7급	소계	227	15	2	8	5	77	25	9	4	8	9	8	7	7			
	행정	95	5	2	3		45	17	7	3	5			6	7			
	세무	2					2						2					
	전산	1	1			1												
	공업	5					2	2										
	녹지	4																
	해양수산	6																
	보건	2																
	식품위생	3																
	간호	1																
	환경	5																
	시설	34	2		2		2	2										
	방송통신	4	2			2	1	1										
	시설관리	1																
	운전	6					4	1	1		1				1			
	기계운영	1																
	선박항해운영	2																
	선박기관운영	1																
	행정·세무	20	1		1		19	1	1		2	9	6					
	행정·전산	3	2			2	1	1										
	행정·사회복지	15	1		1													
	행정·공업	1																
	행정·해양수산	1																
	행정·보건	1																
	행정·환경	1																
	행정·시설	6	1		1		1				1							
	공업·환경	3																

계급	직렬	합계	직속부서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자치행정국계	총무과	기획예산과	새마을경제협력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7급	공업·시설	2													
	보건·식품위생	1													
8급	소계	176	7	2	1	4	50	15	6	2	4	10	7	5	1
	행정	63	2	1	1		32	12	6	2	4		2	5	1
	세무	4					4					4			
	전산	2													
	사회복지	3													
	공업	8	1	1											
	농지	3													
	해양수산	8													
	보건	5													
	환경	3													
	시설	26													
	방송통신	2	2			2									
	위생	1					1	1							
	운전	4													
	건축운영	1					1	1							
	통신운영	1													
	전화상담운영	1	1			1									
	기계운영	4													
	선박항해운영	2													
	행정·세무	11					10					5	5		
	행정·전산	1													
	행정·사회복지	11													
	행정·사서	1					1	1							
	행정·공업	1													
	행정·시설	7													
	세무·전산	1					1					1			
	전산·방송통신	1	1			1									
	공업·시설	1													

계급	직	별	합	직속부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새마을지원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계	계
9급	소	계	142	8	2	1	5	35	12		1	3	7	5	5	2		
	행	정	13	1	1			6	2			1			2	1		
	세	무	10					10					5	5				
	전	산	2	2			2											
	사	회	복	지	29													
	공	업	4															
	녹	지	2															
	보	건	2															
	환	경	3															
	시	설	20	1		1		2	1		1							
	방	송	통	신	1	1		1										
	위	생	3					1	1									
	시	설	관	리	2			1	1									
	운	전	3					1				1						
	통	신	운	영	1	1	1											
	전	화	상	담	운	영	2	2										
	전	기	운	영	4													
	기	계	운	영	3													
	열	관	리	운	영	4		2	2									
	사	무	운	영	34			12	5			1	2		3	1		
	전	문	경	력	관	계	7	1	1									
	나	군	소	계	7	1	1											
			전	문	경	력	관	7	1	1								
	별	정	직	계	1			1	1									
6급	소	계	1					1	1									
	별	정	1					1	1									

계급	직렬	경제	지역	투자	항만	해양	산림	환경	자원	주민	어린	주민	복지	가족	문화	관광	체육
		향만	경제	지원	물류	수산	녹지	위생	순환	복지	이행	생활	지원	청소	예술	진흥	진흥
합계	계	155	23	18	12	28	18	30	26	169	21	41	23	16	20	20	28
정무직계																	
	소계																
	정무																
일반직계		155	23	18	12	28	18	30	26	163	21	41	23	13	20	20	25
3급	소계																
	행정																
4급	소계	1	1							1	1						
	행정																
	행정·기술	1	1							1	1						
5급	소계	7	1	1	1	1	1	1	1	7	1	1	1	1	1	1	1
	행정	2	1	1						2					1		1
	시설																
	행정·사회복지									4	1	1	1	1			
	행정·시설	1			1					1						1	
	행정·방송통신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공업·보건·환경	1						1									
6급	소계	37	6	5	3	7	5	6	5	35	5	6	6	5	4	5	4
	행정	13	5	5	2				1	6					2	2	2
	세무																
	전산																
	사회복지									2		2					

계급	직렬	경제항만국계	지역경제과	투자지원과	항만물류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주민복지국계	어린이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가족청소년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6급	공업																
	녹지	2					2										
	해양수산	3				3											
	시설									1						1	
	시설관리	1						1									
	운전																
	기계운영																
	선박항해운영	1				1											
	사무운영																
	행정·세무																
	행정·전산																
	행정·사회복지									18	4	4	5	5			
	행정·공업	1	1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환경	2						1	1								
	행정·시설	2			1	1				2					1	1	
	행정·학예연구									1					1		
	전산·시설																
	전산·방송통신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1							1
	농업·시설																
	녹지·시설	2					2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환경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행정·전산·방송통신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보건·환경	1							1								

계급	직렬	경제항만국계															
		지역경제과	투자지원과	항만물류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주민복지국계	어린이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가족청소년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6급	행정·환경·시설																
	공업·보건·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국토									1	1						
7급	소계	51	5	3	4	11	5	14	9	37	7	5	7	3	6	4	5
	행정	14	4	3	3		1		3	17	4	1	1	2	4	3	2
	세무																
	전산																
	공업									2							2
	녹지	4					4										
	해양수산	5					5										
	보건	2							2								
	식품위생	3							3								
	간호									1							1
	환경	5							3	2							
	시설	2			1	1				1						1	
	방송통신																
	시설관리	1							1								
	운전	2							1	1							
	기계운영	1								1							
	선박항해운영	2					2										
	선박기관운영	1					1										
	행정·세무																
	행정·전산																
	행정·사회복지									14	3	4	6	1			
	행정·공업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1					1										
	공업·환경	3							2	1							

계급	직렬	경제항만국계																
		지역경제과	투자지원과	항만물류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주민복지국계	어린이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가족청소년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7급	공업·시설									2						2		
	보건·식품위생	1						1										
8급	소계	40	5	5	3	9	5	5	8	33	4	6	4	2	4	8	5	
	행정	12	3	4	2				3	12	1			1	2	5	3	
	세무																	
	전산																	
	사회복지									2		1	1					
	공업	2	1						1									
	녹지	3					3											
	해양수산	8			1	7												
	보건	5						4	1									
	환경	3						1	2									
	시설	1					1			4	1					2	1	
	방송통신																	
	위생																	
	운전	1					1											
	건축운영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기계운영	1							1	2					1		1	
	선박항해운영	2				2												
	행정·세무	1		1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1	2	5	3	1				
	행정·사서																	
	행정·공업																	
	행정·시설									1						1		
	세무·전산																	
	전산·방송통신																	
	공업·시설									1					1			

계급	직	별	경제	지역	투자	항만	해양	산림	환경	자원	주민	어린	주민	복지	가족	문화	관광	체육
			향만	경제	지원	물류	수산	녹지	위생	순환	복지	이행	생활	지원	청소	예술	진흥	진흥
9급	소계		19	5	4	1		2	4	3	50	3	23	5	2	5	2	10
	행정		4	2	1				1		2					1	1	
	세무																	
	전산																	
	사회복지										29	2	23	3	1			
	공업										3					1	1	1
	녹지		2					2										
	보건		1						1		1							1
	환경		3						2	1								
	시설		1		1													
	방송통신																	
	위생		1							1	1							1
	시설관리																	
	운전										1				1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1							1	1							1
	기계운영										2			1				1
	열관리운영										2							2
	사무운영		6	3	2	1					8	1		1		3		3
	전문경력관										6				3			3
나	소계										6				3			3
	전문경력관										6				3			3
별	정	직	계															
6급	소	계																
	별	정																

계급	직렬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공영사업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합	계	169	24	20	34	18	27	24	22								
정무	직계																
	소계																
	정무																
일반	직계	169	24	20	34	18	27	24	22								
3급	소계																
	행정																
4급	소계	1	1														
	행정																
	행정·기술	1	1														
5급	소계	7	1	1	1	1	1	1	1								
	행정	1							1								
	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																
	행정·시설	4	1	1		1			1								
	행정·방송통신																
	행정·공업·환경																
	행정·녹지·시설																
	행정·해양수산·시설																
	공업·보건·환경																
6급	소계	38	6	4	7	4	6	6	5								
	행정	4		1					3								
	세무																
	전산																
	사회복지																

계급	직렬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공영사업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국	과	과	과	과	과	과	과									
6급	공업																	
	녹지																	
	해양수산																	
	시설	14	3		2	2	4		3									
	시설관리																	
	운전																	
	기계운영																	
	선박항해운영																	
	사무운영	1						1										
	행정·세무																	
	행정·전산																	
	행정·사회복지																	
	행정·공업	1			1													
	행정·녹지																	
	행정·해양수산																	
	행정·환경																	
	행정·시설	14	3	3	2	2	2	1	1									
	행정·학예연구																	
	전산·시설	1							1									
	전산·방송통신																	
	공업·환경																	
	공업·시설																	
	농업·시설	1			1													
	녹지·시설																	
	보건·식품위생																	
	보건·환경																	
	행정·세무·사회복지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녹지·시설																	
	행정·보건·환경																	

계급	직렬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공영사업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계	과	과	과	과	과	과	과									
6급	행정·환경·시설	1			1													
	공업·보건·환경																	
	행정·사회복지·보건																	
7급	소계	47	8	8	8	5	6	6	6									
	행정	14	2	2	3	1	1	4	1									
	세무																	
	전산																	
	공업	1			1													
	녹지																	
	해양수산	1		1														
	보건																	
	식품위생																	
	간호																	
	환경																	
	시설	27	6	3	4	4	4	1	5									
	방송통신	1		1														
	시설관리																	
	운전																	
	기계운영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행정·세무																	
	행정·전산																	
	행정·사회복지																	
	행정·공업																	
	행정·해양수산																	
	행정·보건																	
	행정·환경																	
	행정·시설	3		1				1	1									
	공업·환경																	

계급	직렬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공영사업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계	과	과	과	과	과	과	과									
7급	공업·시설																	
	보건·식품위생																	
8급	소계	46	6	4	8	6	8	9	5									
	행정	5			1			3	1									
	세무																	
	전산	2						1	1									
	사회복지	1					1											
	공업	5		1	2	2												
	녹지																	
	해양수산																	
	보건																	
	환경																	
	시설	21	6	1	2	3	5	1	3									
	방송통신																	
	위생																	
	운전	3			2			1										
	건축운영																	
	통신운영	1						1										
	전화상담운영																	
	기계운영	1						1										
	선박항해운영																	
	행정·세무																	
	행정·전산																	
	행정·사회복지																	
	행정·사서																	
	행정·공업	1		1														
	행정·시설	6		1	1	1	2	1										
	세무·전산																	
	전산·방송통신																	
	공업·시설																	

계급	직렬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공영사업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30	2	3	10	2	6	2	5								
9급	소계	30	2	3	10	2	6	2	5								
	행정																
	세무																
	전산																
	사회복지																
	공업	1						1									
	녹지																
	보건																
	환경																
	시설	16	2	2	3	2	5		2								
	방송통신																
	위생																
	시설관리	1			1												
	운전	1			1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			1												
	열관리운영																
	사무운영	8		1	2		1	1	3								
전문경력관																	
나	소계																
	전문경력관																
별정직																	
6급	소계																
	별정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3]

[직속기관]

계급	직렬	합계	보건소계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농업기술센터계	농정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산물유통과									
											합계	보건소계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농업기술센터계	농정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산물유통과
합	계	169	92	65	27	77	21	20	21	15									
일	반 직 계	134	92	65	27	42	21	1	5	15									
4	급 소 계	1	1	1															
	기 술	1	1	1															
5	급 소 계	6	3	2	1	3	2			1									
	보 건	1	1	1															
	행 정 · 농 업	2				2	1			1									
	농 업 · 농 촌 지도	1				1	1												
	보 건 · 의 무	1	1		1														
	행 정 · 보 건 · 간 호	1	1	1															
6	급 소 계	25	16	11	5	9	5			4									
	농 업	2				2	2												
	보 건 진 료	6	6	6															
	행 정 · 농 업	5				5	1			4									
	농 업 · 수 의	2				2	2												
	행 정 · 보 건 · 간 호	1	1	1															
	보 건 · 의 료 기 술 간 호	8	8	4	4														
	행 정 보 건 의 료 기 술 간 호	1	1		1														
7	급 소 계	38	25	17	8	13	9			4									
	행 정	2	1	1		1				1									
	농 업	8				8	6			2									
	수 의	1				1	1												
	보 건	4	4	2	2														
	간 호	5	5	1	4														
	보 건 진 료	5	5	5															

계급	직렬	합계	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농정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산물유통과											
						농업기술센터	농정															
7급	운전	1	1	1																		
	행정·공업	1				1	1															
	행정·농업	2				2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9	9	7	2																	
8급	소계	47	39	28	11	8	2	1	3	2												
	행정	3				3	2			1												
	공업	1	1	1																		
	농업	3				3			3													
	보건	12	12	8	4																	
	의료기술	9	9	5	4																	
	간호	2	2	1	1																	
	보건진료	7	7	7																		
	운전	2	1	1		1		1														
	행정·농업	1				1				1												
	행정·보건	1	1	1																		
	행정·간호	3	3	2	1																	
	의료기술·간호	3	3	2	1																	
9급	소계	17	8	6	2	9	3		2	4												
	행정	2				2				2												
	농업	4				4	2			2												
	보건	6	6	5	1																	
	의료기술	1	1		1																	
	시설관리	1				1			1													
	운전	1	1	1																		
	농림운영	1				1				1												
	사무운영	1				1	1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5]

[읍면동]

계급	직렬	합계	읍계	읍구	면계	면산	면회현	면임피	면서수	면대야	면개정	면성산	면나포	면읍도	면읍서		
합	계	308	13	13	118	11	11	11	11	14	11	11	11	15	12		
일	반 직 계	308	13	13	118	11	11	11	11	14	11	11	11	15	12		
5	급 소 계	27	1	1	10	1	1	1	1	1	1	1	1	1	1		
	행정·사회복지 보건	2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	1															
	행정·사회복지 시설	4															
	행정·농업·녹지	1			1								1				
	행정·농업·간호	2			2	1	1										
	행정·농업·환경	1			1					1							
	행정·사회복지사서시설	2															
	행정·사회복지공업농업	1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2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행정·사회복지군인요양기술	1															
	행정·사회복지요양기술시설	1															
	행정·사회복지시설보충통신	1															
	행정·공업·농업·녹지	1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1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2	1	1	1									1			
	행정·농업·간호·환경	1			1						1						
6	급 소 계	57	3	3	31	3	3	3	3	3	3	3	3	4	3		
	행 정	13															
	행정·사회복지	17	1	1	9	1	1	1	1	1	1	1	1	1			

계급	직렬	합	읍	읍	면	면	회	임	서	대	개	성	나	읍	읍		
		계	계	구	계	면	현	피	수	야	정	산	포	도	서		
6급	행정·공업	1															
	행정·농업	14	1	1	11	2	2	1	1	1	2	1	1				
	선박항해운항관리영	1			1									1			
	행정·세무·농업	1			1										1		
	행정·공업·농업	1			1				1								
	행정·농업·보건	1			1									1			
	행정·농업·시설	1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1			
	행정·세무·농업·복지	2			2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2	1	1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1	
7급	소계	81	4	4	31	3	2	3	3	5	3	3	2	3	4		
	행정	31	1	1	5	1			1	1	1				1		
	사회복지	18	1	1	8	1	1	1	1	1	1	1			1		
	선박항해운영	1			1									1			
	선박기관운영	1			1									1			
	행정·세무	5															
	행정·사회복지	7															
	행정·농업	11	1	1	10		1	1	1	2	1	1	1	1	1		
	행정·복지	2			2							1	1				
	행정·시설	5	1	1	4	1		1		1						1	
8급	소계	65	2	2	20	2	2	2	2	2	1	1	2	4	2		
	행정	25	1	1	2	1		1									
	사회복지	8			2				1				1				
	해양수산	1			1									1			
	시설	1			1									1			
	행정·사회복지	15			2								1	1			
	행정·농업	10	1	1	7	1	1	1		1		1		1	1		
	행정·시설	5			5		1		1	1	1					1	



계급	직	결	동	해	월	삼	신	중	흥	조	경	구	개	수	나	나	나	소	미	
			계	신	명	학	풍	양	남	춘	암	암	정	송	1	2	3	통	성	
계급	직	결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합	계		177	8	9	9	9	8	10	11	9	9	8	17	11	17	17	12	13	
일	반	직	계	177	8	9	9	9	8	10	11	9	9	8	17	11	17	17	12	13
5	급	소	계	16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1						1					
		행정·사회복지·의료·술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4		1	1			1							1			
		행정·농업·녹지																		
		행정·농업·간호																		
		행정·농업·환경																		
		행정·사회복지·사무·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공업·농업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의료·술		1									1							
		행정·사회복지·의료·술·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방송·통신		1								1								
		행정·공업·농업·녹지																		
		행정·공업·농업·시설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행정·농업·간호·환경																		
6	급	소	계	23	1	1	1	1	1	1	2	1	1	1	2	2	2	2	2	
		행	정	13	1	1	1	1	1	1	1	1		1	1	1	1			
		행정·사회복지		7						1				1	1	1	1	1	1	

계급	직렬	동	해	월	삼	신	중	흥	조	경	구	개	수	나	나	나	소	미
		계	신	명	학	풍	양	남	춘	암	암	정	송	운	운	운	룡	성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1	2	3	동	동
6급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2										1						1
	선박항해운영																	
	행정·세무·농업																	
	행정·공업·농업																	
	행정·농업·보건																	
	행정·농업·시설																	
	행정·해양수산·시설																	
	행정·세무·농업·복지																	
	행정·해양수산·시설																	
	행정·공업·농업·시설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7급	소계	46	3	3	3	3	2	3	3	3	2	1	3	3	3	5	3	3
	행정	25	2	1	1	2	1	2	1	2	2	1	1	2	1	3	1	2
	사회복지	9	1			1	1		1	1			1	1			1	1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행정·세무	5							1				1		1	1	1	
	행정·사회복지	7		2	2			1							1	1		
	행정·농업																	
	행정·복지																	
	행정·시설																	
8급	소계	43	1	2	2	2	2	2	2	2	3	2	4	4	4	5	3	3
	행정	22	1	1	1	1	2	1	2	1	1	1	2	2	2	2	1	1
	사회복지	6		1	1			1			1				1	1		
	해양수산																	
	시설																	
	행정·사회복지	13				1				1	1	1	1	2	1	2	2	1
	행정·농업	2											1					1
	행정·시설																	



현행										개정안											
<b>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표</b>										<b>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표</b>											
[별표1]					[본청]					[별표1]					[본청]						
계급	직	렬	합 계	직 속 부 서	공 보 담 관	감 사 담 관	자 치 행 정 국 계	총 무 과	기 획 예 산 과	새 만 금 국 제 협 력 과	계급	직	렬	합 계	직 속 부 서	공 보 담 관	감 사 담 관	자 치 행 정 국 계	총 무 과	기 획 예 산 과	새 만 금 국 제 협 력 과
			744					64		12				745					63		13
6급	소	계	162								6급	소	계	163							
	공	업										공	업	1				1	1		
	전	기 운 영	1				1	1				전	기 운 영								
	행	정· 학 예 연 구										행	정· 학 예 연 구	1							
7급	소	계	223	14	7	76		8			7급	소	계	227	15	8	77		9		
	행	정	93	4	2	44		6				행	정	95	5	3	45		7		
	공	업	3			1	1					공	업	5			2	2			
	방	송 통 신	2									방	송 통 신	4			1	1			
	통	신 운 영	1			1	1					통	신 운 영								
	기	계 운 영	2			1	1					기	계 운 영	1							
8급	소	계	177	6	1		16		1		8급	소	계	176	7	2		15		2	
	행	정					13		1			행	정				12		2		
	공	업	6									공	업	8	1	1					
	해	양 수 산	6									해	양 수 산	8							
	통	신 운 영	2									통	신 운 영	1							
	전	기 운 영	1									전	기 운 영								
	기	계 운 영	5									기	계 운 영	4							
	선	박 기 관 운 영	2									선	박 기 관 운 영								
9급	소	계	145	10	3	2	36		1		9급	소	계	142	8	2	1	35			
	행	정					7	3				행	정				6	2			
	시	설					1					시	설				2	1			
	기	계 운 영	4	1	1							기	계 운 영	3							
	사	무 운 영	36	1		1	13		1			사	무 운 영	34				12			

현행										개정안											
<b>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표</b>										<b>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표</b>											
[별표1]					[본청]					[별표1]					[본청]						
계급	직	명	투자지원	해양수산	자원순환	주민복지	문화예술키	문화예술키	안전총괄	건설	계	명	투자지원	해양수산	자원순환	주민복지	문화예술키	문화예술키	안전총괄	건설	계
일 반 직 계										일 반 직 계											
6급 소 계										6급 소 계											
공 업										공 업											
전 기 운 영										전 기 운 영											
행정·학예연구										행정·학예연구											
7급 소 계										7급 소 계											
행 정										행 정											
공 업										공 업											
방 송 통 신										방 송 통 신											
통 신 운 영										통 신 운 영											
기 계 운 영										기 계 운 영											
8급 소 계										8급 소 계											
행 정										행 정											
공 업										공 업											
해 양 수 산										해 양 수 산											
통 신 운 영										통 신 운 영											
전 기 운 영										전 기 운 영											
기 계 운 영										기 계 운 영											
선 박 기 관 운 영										선 박 기 관 운 영											
9급 소 계										9급 소 계											
행 정										행 정											
시 설										시 설											
기 계 운 영										기 계 운 영											
사 무 운 영										사 무 운 영											

현행

개정안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표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표

[별표3] [직속기관]

[별표3] [직속기관]

계급	직 렬	합	보	보			
		계	건	건	사	사	사
		계	소	소	업	업	업
6급	행정·보건·간호	2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7	7	3			
8급	공 업						
	열 관 리 운 영	1	1	1			

계급	직 렬	합	보	보			
		계	건	건	사	사	사
		계	소	소	업	업	업
6급	행정·보건·간호	1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8	8	4			
8급	공 업	1	1	1			
	열 관 리 운 영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표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표

[별표4] [사업소]

[별표4] [사업소]

계급	직 렬	합	수	수	시	예	시	철
		계	도	도	설	술	립	새
		계	사	사	관	의	도	생
		계	업	업	리	전	서	태
		계	소	소	사	당	관	관
		계	계	계	업	관	리	리
		계	과	과	소	리	과	과
7급	소 계	40	19	13	17		8	
	행 정	15	5	4				
	공 업	5	3	2	1		1	
	전 기 운 영	1			1	1		
	기 계 운 영	3	2	2				
	열 관 리 운 영	1			1		1	
	사 무 운 영	2	2	2				
8급	소 계	31			8		5	
	공 업	4	4	2				
	전 기 운 영	2			1	1		
	기 계 운 영	3	2	1				
	열 관 리 운 영	2			2		1	1
9급	소 계	31	15	11				
	화 공 운 영	1	1	1				

계급	직 렬	합	수	수	시	예	시	철
		계	도	도	설	술	립	새
		계	사	사	관	의	도	생
		계	업	업	리	전	서	태
		계	소	소	사	당	관	관
		계	계	계	업	관	리	리
		계	과	과	소	리	과	과
7급	소 계	42	20	14	18		9	
	행 정	17	7	6				
	공 업	11	6	5	4	1	3	
	전 기 운 영							
	기 계 운 영	1						
	열 관 리 운 영							
	사 무 운 영							
8급	소 계	30			7		4	
	공 업	7	5	3	2	1	1	
	전 기 운 영	1						
	기 계 운 영	2	1					
	열 관 리 운 영							
9급	소 계	30	14	10				
	화 공 운 영							

현행

개정안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표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표

[별표5]

[읍면동]

계급	직	렬	합	면					
				계	면	읍	임	성	나
					산	피	산	포	도
계급	직	렬	계	면	면	면	면	면	면
7급	소	계	80						
7급	행	정	30						
7급	행	정 · 녹지							
7급	행	정 · 시설	7	6			1	1	
8급	소	계	62	18	1	1			
8급	행	정	22						
8급	해	양 수 산							
8급	선	박 항 해 운영	1	1					1
9급	소	계	82	28	3	3			
9급	사	무 운 영	12	9	1	1			

[별표5]

[읍면동]

계급	직	렬	합	면					
				계	면	읍	임	성	나
					산	피	산	포	도
계급	직	렬	계	면	면	면	면	면	면
7급	소	계	81						
7급	행	정	31						
7급	행	정 · 녹지	2	2			1	1	
7급	행	정 · 시설	5	4					
8급	소	계	65	20	2	2			
8급	행	정	25	2	1	1			
8급	해	양 수 산	1	1					1
8급	선	박 항 해 운영							
9급	소	계	78	26	2	2			
9급	사	무 운 영	8	7					

계급	직	렬	동	나					
				운	운				
			2	3					
계급	직	렬	계	동	동				
7급	소	계	45		4				
7급	행	정	24		2				
7급	행	정 · 녹지							
7급	행	정 · 시설							
8급	소	계	42	3					
8급	행	정	21	1					
8급	해	양 수 산							
8급	선	박 항 해 운영							
9급	소	계	51	8	5				
9급	사	무 운 영	2	1	1				

계급	직	렬	동	나					
				운	운				
			2	3					
계급	직	렬	계	동	동				
7급	소	계	46		5				
7급	행	정	25		3				
7급	행	정 · 녹지							
7급	행	정 · 시설							
8급	소	계	43	4					
8급	행	정	22	2					
8급	해	양 수 산							
8급	선	박 항 해 운영							
9급	소	계	49	7	4				
9급	사	무 운 영							

군산시 공고 제2015-431호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4월

## 군 산 시 장

###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제안이유

-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용자심의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신설 및 개정하여 중소기업육성 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 용자심의위원회를 확대 적용하여 위원회 기능 강화 및 활성화 도모

####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구성 개정 (안 제2조)

- 용자심의위원회 위원은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 군산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전북은행 군산지점장, 신용보증기금 군산지점장, 군산시 향만경제국장, 간사는 투자지원과장을 6인 이상 8인 이내로 변경함 (안 제2조1항)
-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을 신설(안 제2조2항)

1. 군산시 업무관련 국장
  2. 군산시의회 의원
  3. 경제관련기관·단체의 임원
  4. 군산시 금융기관 임원
  5. 그밖의 투자 및 기업관련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자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지원과장으로 함을 신설(안 제2조3항)

###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04월 21일까지 군산시장(투자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제출처 : 군산시청 투자지원과

- 1)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 (우편번호 573-703)
- 2) 연 락 처 : 063-454-2743(FAX 454-2729)

####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 라. 문의처 : 군산시청 투자지원과 기업지원계 (063-454-2743)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 호

##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 군산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전북은행 군산지점장, 신용보증기금 군산지점장, 군산시 항만경제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투자지원과장으로”를 “6인이상 8인 이내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산시 업무관련 국장
2. 군산시의회 의원
3. 경제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4. 군산시 금융기관 임원
5. 그밖의 투자 및 기업관련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지원과장으로 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원회 구성) 조례 제11조에 의한 <u>군산시용자심의위원회</u>의 위원은 <u>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 군산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전북은행 군산지점장, 신용보증기금 군산지점장, 군산시 항만경제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투자지원과장으로 한다.</u></p>	<p>제2조(위원회 구성) ① ----- ----- ----- <u>6인이</u> <u>상 8인 이내로</u>----- ----- ----- ----- ----- ----- ----- -----</p>
<p>&lt;신 설&gt;</p>	<p>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군산시 업무관련 국장</u></li> <li>2. <u>군산시의회 의원</u></li> <li>3. <u>경제 관련기관·단체의 임원</u></li> <li>4. <u>군산시 금융기관 임원</u></li> <li>5. <u>그밖의 투자 및 기업관련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자</u></li> </ol>
<p>&lt;신 설&gt;</p>	<p>③ <u>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지원과장으로 한다.</u></p>

**군산시 공고 제2015 -467 호**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4월 일

**군 산 시 장****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2955호, 2014.12.31)되어 관계 조문이 변경되고,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개정에 따른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축소(안 제3조)

※ 면제 ⇒ 100분의75(2016.12.31.까지), 100분의50(2017.1.1~2017.12.31)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 개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당초 면제에서 100분의50으로 축소(안 제4호)

다.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경감 대상 지역에 “임피농공단지” 추가 지정(안 제7조제4호)

라. 현행 법령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인용 법령 정비

- 1)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 중 인용 법령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으로(안 제5조 제2호),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로(안 제5조제3호)로 각각 변경
- 2) 감면 신청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 “제126조제1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13조제1항)
- 3) 감면자료의 제출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제127조”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14조제1항)

마. 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 (부칙 안 제2조)

-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연장

### 3. 의견제출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4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번지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전화 063-454-2403, 팩스 063-452-8162, 전자우편 : choiwonju@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세정계 (전화 063-454-2403 담당자 최원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자치법규안 검토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검토의견		사유	비고
	찬성	반대		

※ 조문별 사용 가능

군산시 조례 제 호

##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현재 「의료법」에 따른”을 “현재”로,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를 “대해서는 「지방세특별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제2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로 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피농공단지

제13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1항”을 “제126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제48조”를 “제127조”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 ----- 현재----- -----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 -----.</p>
<p>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p>	<p>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p>	<p>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 -----</p>

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생략)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단체 및 법인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서 휴·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  
 -----  
 -----.

1. (현행과 같음)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  
 -----  
 -----  
 -----  
 -----  
 -----.

1. ~ 3. (생 략)

<신 설>

제13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임피농공단지

제13조(감면 신청 등) ① -----  
-----  
-----제126조제1  
항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  
-----  
-----  
----- 제127조-----  
-----  
-----.

**참고**      **관**   **련**      **법**   **률**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박피(薄皮)·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의 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4(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른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⑤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되어 도청 소재지인 시가 된 경우 종전의 시(도청 소재지인 시는 제외한다)·군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에서 통합되기 전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감면 신청) ① 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2.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3. 주민세: 균등분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재산분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종업원분은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 이내
4. 삭제
5.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6. 자동차세: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 전부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27조(감면자료의 제출) 법 제184조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감면대상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군산시 공고 제2015 - 503 호

『군산시 하수도 사업 설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 월 일

# 군 산 시 장

## 군산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제정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 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 설치의 목적과 사업범위 및 사업구역을 규정함
  - 군산시 행정구역내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군산시 하수도 사업 관리자 지정 및 조직구성
  - 관리자 : 하수도 업무 담당 국장
  - 조직 및 인사 : 관리자는 하부조직 설치 및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 건의할 수 있음
- 기업관리 규정 및 재정 운영

- 특별회계의 설치 (독립채산제로 운영) 및 일반회계의 비용부담
-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지원은 무상
- 회계처리 사항 및 업무상황설명서 시장에게 제출

○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함

### 3. 의견제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4월 2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하수과(전화 454-5452 , 팩스 454-544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하수과 하수행정계(전화 454-54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마을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군산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외 지역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및 인사)**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군산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사용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차입금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9조(회계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군산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군산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내지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이를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없는 사업 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 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잉여금에서 제1호·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5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 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산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자본금) 이 조례 시행 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 (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 군산시 공고 제2015 - 505호

『군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 월 1 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회계규칙 제정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군산시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군산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제정목적과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 군산시 하수도 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
  - 관리자 : 하수도 업무 담당 국장
  - 기업출납원 : 하수과장

## ○ 관리자의 직무 위임 범위

-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보조금등의 징수결정
- 과오납금의 반환 및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 5,000만원이하의 공사, 2,000만원 이하의 용역 , 500만원 이하의 물건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및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 ○ 준용 규정

- 예산회계법·동법시행령 및 지방재정법·동법시행령과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 「군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및 「군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규칙」

### 3. 의견제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4월 2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하수과(전화 454-5452 , 팩스 454-544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하수과 하수행정계(전화 454-54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 군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군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과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관리자: 수도사업소장
2. 기업출납원: 하수과장
3. 수입원: 하수행정계장
4. 지출원: 하수행정계장
5. 자산출납원: 하수행정계장
6. 일상경비출납원: 하수행정계장
7.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하수행정계장

② 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산시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5,000만원이하의 공사, 2,000만원이하의 용역 및 제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와 제4호 이외의 것으로써 추정금액 200만원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규정)** 하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동법시행령 및 지방재정법·동법시행령과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군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및 「군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고시 제2015 - 49 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3. 19.

###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군산2차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아파트신축공사
2. 사업주체 :
  - 가. 지역주택조합
    - 1) 명 칭 : 군산2차 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 2) 대표자 : 전미경(임시대행)
    - 3) 주 소 : 군산시 수송동 852-2번지, 청담빌딩 4층
  - 나. 공동사업주체
    - 1) 회사명칭 : 현대엔지니어링주식회사
    - 2) 대 표 자 : 김 위 철
    - 3)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3. 사업내용
  - 가. 사업위치 :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17번지의외 34필지
  -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 나. 대지면적 : 20,523.00㎡
  - 다. 건축면적 : 3,311.90㎡
  - 라. 연 면 적 : 65,840.33㎡
  - 마. 건축규모 : 아파트 4동 24~26층, 449세대
    - 전용 84.9838㎡ 403세대
    - 전용 84.9848㎡ 46세대
  -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사. 사 업 비 : 68,193,293천원

## 4. 주요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사업기간	2013.01.02~2015.05.31.	2013.01.02~2015.08.25	

5. 변경승인일 : 2015년 03월 19일

6.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7	군산2차 현대엠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17번지 일원	25,361	증) 237	25,598	

##### 나.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37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17번지 일원	○면적변경 - 25,361㎡ → 25,598㎡ (증 237㎡)	진·출입로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변경 및 지적분할에 의한 확정면적 정정

#### 2.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가.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19	20	보조 간선	1,050	지곡동 광로2-3	지곡동 대로2-9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 지	군산고210 ('96.6.1)	
변경	중로	1	19	20	보조 간선	1,050 (160)	지곡동 광로2-3	지곡동 대로2-9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 지	군산고210 ('96.6.1)	폭원확장
폐지	중로	2	138	15	국지 도로	192	중로1-1 9	중로2-2 8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 지	군산고210 ('96.6.1)	구역체척에 따른 환원
신설	소로	1	261	10	국지 도로	192	중로1-1 9	중로2-2 8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 지	군산고210 ('96.6.1)	구역체척에 따른 환원

2)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중로 1-19	중로 1-19	• 지구단위계획구역 구간 (L=160m, B=18.5m~19.5m) 폭원 20m로 확장	• 기존 폭원 20m 미확보 구간에 대한 폭원 20m확보	
중로 2-138	-	• 노선폐지	•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하는 부분에 대하여 당초 지구단위계획(폭원확장)을 해제	
-	소로 1-261	• 노선신설 - B=10m, L=192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부분)	•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하는 부분에 대하여 당초 지구단위계획(폭원확장)을 해제	

나.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기정	변경	변경후	
1BL	25,361	증)237	25,598	1-①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17번지 일원	20,480	증)43	20,523	공동주택용지	
				1-②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35-1번지 일원	4,881	증)194	5,075	도로용지	

다.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1-①		용 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건폐율	20% 이하	조례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조례 250% 이하
		높 이	26층 이하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적용

① 라.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차량출입 허용구간	• 공동주택용지 진출입구 주변에 한하여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 • 지정된 구간 이외지역에서의 차량출입은 불허함
도로확폭	•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확폭 - 기정 소로1-266호선 지구단위계획구역 구간(L=154m) 확폭 : B= 증 2m - 기정 중로1-19호선 지구단위계획구역 구간(L=160m) 확폭 : B= 증 0.5m~1.5m

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612	8	국지 도로	366	중로1-18	소로2-61 9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 지	군산고210 (’96.6.1)	
변경	소로	2	612	8	국지 도로	371	중로1-18	소로2-61 9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 지	군산고210 (’96.6.1)	구역체척에 따른 환원
기정	소로	2	619	8	국지 도로	192	중로1-19	중로2-28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 지	군산고210 (’96.6.1)	
변경	소로	2	619	8	국지 도로	191	중로1-19	중로2-28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 지	군산고210 (’96.6.1)	노선축소 가각변경
기정	소로	2	620	8	국지 도로	366	중로1-18	소로2-61 9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 지	군산고210 (’96.6.1)	
변경	소로	2	620	8	국지 도로	371	중로1-18	소로2-61 9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 지	군산고210 (’96.6.1)	구역체척에 따른 환원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소로 2-612	소로 2-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연장(L=366m→371m, 증 5m)</li> <li>가각변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정 중로2-138호선 폐지 및 소로1-261호선 신설(환원)에 의한 노선연장 및 가각변경</li> </ul>	
소로 2-619	소로 2-6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축소(L=192m→191m, 감 1m)</li> <li>가각변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정 중로1-19호선 폭원 20m 미확보구간에 대한 폭원 20m 확보에 의한 노선축소 및 가각변경</li> </ul>	
소로 2-620	소로 2-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연장(L=366m→371m, 증 5m)</li> <li>가각변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정 중로2-138호선 폐지 및 소로1-261호선 신설(환원)에 의한 노선연장 및 가각변경</li> </ul>	

군산시 고시 제2015- 50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9호선의 1개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3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5년 3월 27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1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나. 명 칭 : 군산2차 현대엠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 도로(중로1-19호선의 1개노선)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변경없음)

구분	노 선 명	시설결정		금회 실시계획(변경)인가						비고
				당 초			변 경			
		폭원 (m)	연장 (m)	폭원 (m)	연장 (m)	면적 (㎡)	폭원 (m)	연장 (m)	면적 (㎡)	
도로	중로1-19	20	1,050	20	15	301	20	160	3,228	진출입 구간개설
	중로3-70	12	154	12	154	1,837	12	154	1,847	전구간 개설

#### 4. 사업시행자(변경)

당초 군산시 공단대로248, 군산2차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대표 전윤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75, 현대엔지니어링(주) 대표 김위철  
 변경 군산시 수송안길 3(수송동 3층), 군산2차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대표 전미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75, 현대엔지니어링(주) 대표 김위철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당초 2013. 1. 2 ~ 2015. 5. 31. 변경 2013. 1. 2 ~ 2015. 10. 31.

#### 6.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조서 참조

####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실음 생략

#### 8.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종로1-19호선 (단위 : ㎡)

순번	위치	변경진				변경후				증감	토지변경사항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옥산면 당부리	935-1	담	774	236	935-8	담	515	234	감 2	935-1에서 분할	진리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진리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2	옥산면 당부리	938	전	813	65	938-1	전	222	60	감 5	938에서 분할	군산시 지곡동 42-5	군산시 지곡동 42-5 도현해나지오피스 101동 1405호		
3						916	담	539	538	증 538	신규편입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진리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4						935-1	담	173	127	증 127	신규편입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진리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5						935-3	도	9	9	증 9	신규편입	진리북도 군산시 구시정로 12(대명동)	진리북도 군산시 구시정로 12(대명동)		
6						936-3	도	36	34	증 34	신규편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63번길 10, 204동 606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63번길 10, 204동 606호		
7						962-1	담	439	21	증 21	신규편입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6길 5-15, 104동 208호(고척동, 청구아파트)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6길 5-15, 104동 208호(고척동, 청구아파트)		
8						962-2	담	3,350	54	증 54	신규편입	군산시 대명동 138-28	군산시 대명동 138-28		
9						962-6	담	209	12	증 12	신규편입	옥구군 옥산면 당북리 910	옥구군 옥산면 당북리 910		
10						962-10	담	1,380	1,380	증1,380	신규편입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10	옥구군 옥산면 당북리 910		
11						962-12	담	685	685	증 685	신규편입	진리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진리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12						963	전	3	3	증 3	신규편입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진리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13						994-14	도	487	71	증 71	신규편입	진리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진리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명로 51,201호		
계						13필지		8,047	3,228						

(단위 : m<sup>2</sup>)

○ 종로3-70호선

순번	위치	변경전			변경후			증감	도기변경사항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번	지목	지적면적			평면면적	성명	주소	성명	
1	옥산면 당부리	913-13	임	8,570	913-15	임	297	297	913-13에서 분할	김선현 대표자 전용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평로 51,201호			
2	옥산면 당부리	917	답	2,620	917-2	답	69	69	917에서 분할	김선현 대표자 전용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평로 51,201호			
3	옥산면 당부리	917-1	답	765	917-3	답	231	231	917-1에서 분할	김선현 대표자 전용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평로 51,201호			
4	옥산면 당부리	918	전	850	918-1	전	315	315	918에서 분할	김선현 대표자 전용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평로 51,201호			
5	옥산면 당부리	919-1	전	350	919-3	전	164	164	919-1에서 분할	김선현 대표자 전용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평로 51,201호			
6	옥산면 당부리	919-2	전	493	919-5	전	31	31	919-2에서 분할	김세원	군산시 옥산면 당부리 922			
7	옥산면 당부리	934-2	대	516	934-7	대	1	1	934-2에서 분할	진우배	옥구군 옥산면 당부리 168			
8	옥산면 당부리	935-1	답	774	935-8	답	515	219	935-1에서 분할	김선현 대표자 전용권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평로 51,201호			
9	옥산면 당부리	935-3	도	162	935-11	도	91	91	935-3에서 분할	김보덕	전라북도 군산시 구시장은로 12(대명동)			
10	옥산면 당부리	935-4	도	172	935-12	도	21	21	935-4에서 분할	홍정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척로63번길 10, 204동 606호			
11	옥산면 당부리	935-5	답	345	935-13	답	217	217	935-5에서 분할	홍선희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8길 5-15, 104동 208호(고척동, 청구아파트)			
12	옥산면 당부리	935-6	답	309	935-15	답	82	82	935-6에서 분할	진우배	옥구군 옥산면 당부리 168			
13	옥산면 당부리	994-14	도	3,516	994-18	도	109	109	994-14에서 분할	김창원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월평로 51,201호			
계					13필지		2,143	1,847		국(농림수산부)	군산시 옥산면 당부리 942-1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실제이용상황 (구조 및 규격)	수량 또는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옥산면 당북리	919-5	전	보일러실	씨멘조립식 목조스레이트지붕 보일러포함(6.5*1.8)	11.7㎡	김세원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외당원길 78				
				담장	씨멘조립식 H=1.8m	11m						
				창고	목조 스테이트지붕 (3.0*1.8)	5.4㎡						
				장독대	콘크리트(2.0*2.5)	5.0㎡						
				두릅나무		15주						
				대추나무	H2*R5	1주						
				매실나무	H2*R5	4주						
				장미		2주						
				연산홍	H1*W1	3주						
				유카		6주						
2	옥산면 당북리	935-15	답	대문	철첩식대문(B0.8*L8.5) 조적조콘크리트문주포 함	1식	김창원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외당원길 83				
				토끼장	철파이프조철판지붕(5*5) ) 토끼7마리포함	25㎡						
				사철나무	H2*W1.5	1주						
				명자나무	H2.5*W2	1주						
				연산홍		3주						
				동백나무	H2*R5	1주						
				무궁화1		3주						
				능소화		1주						
				무궁화2	H1.5*W1.0	6주						
				향나무	H1.5*W1.0	1주						
				장미		5주						
				측백나무	H3*W3	10주						
				개나리	H1.5*W1.0	16주						
				깨죽나무	H3*R10	5주						
				사철나무	H2.5*R15	1주						
				이팝나무	H5*R15	2주						
배나무	H4*R10	2주										

군산시 고시 제2015-51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02)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 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4-353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5년 3월 27 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774-2일원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나. 명 칭 : 옥서면 2 도로 개설공사 (중로 1-102호선)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노선명			결정조서		기개설조서		금회시행조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개설폭원 (m)	연장 (m)	개설폭원 (m)	연장 (m)	면적 (㎡)	
도로	중로	1	102	24	340	-	-	24	340	8,577	군산시고시 2012-113호
계				24	340	-	-	24	340	8,57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군산시장
  - 나.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2017.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조서 참조
7. 관계도서: 실음생략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454-3532)에 비치

○ 붙 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옥서면 옥봉리	1774-10	답	2,260	32	박영순 외1	전라북도 군산 시 문화동 26 삼성@ 7-603	옥서신용 협동조합	군산시 옥 서면 옥봉 리1313-29	근저당	
2	옥서면 옥봉리	1774-9	답	3,600	33	최현석	전라북도 군산 시 옥서면 선연 리 128				
3	옥서면 옥봉리	1774-8	답	4,379	188	최미화	전라북도 군산 시 옥서면 옥봉 리 115-169	해선외기 새마을금 고	옥구군 옥 서면 선연 리1752	근저당	
4	옥서면 옥봉리	1774-7	답	4,418	358	김대운	전라북도 군산 시 서흥남동 804-2				
5	옥서면 옥봉리	1774-16	답	2,267	286	신연수 외3	대전광역시 서 구 월평동 19 월 평 타 운 105-801				
6	옥서면 옥봉리	1774-6	답	2,148	273	김은규 외2	군산시 산북동 505-19				
7	옥서면 옥봉리	1774-5	답	4,017	615	박윤중	전라북도 군산 시 옥서면 옥봉 리 47				
8	옥서면 옥봉리	1774-4	답	4,012	1,215	석명옥	전라북도 군산 시 옥서면 옥봉 리 1313	한국농촌 공사	의왕시 포 일동487	근저당	
9	옥서면 옥봉리	1774-3	답	3,977	1,373	이이분	전라북도 군산 시 옥서면 옥봉 리 838-2				
10	옥서면 옥봉리	1774-2	답	3,124	568	김종우	전라북도 군산 시 옥서면 선연 리 148				
11	옥서면 옥봉리	1774-15	도	894	159	공	군산시				
12	옥서면 옥봉리	1487-8	답	26	26	국	국토해양부				
13	옥서면 옥봉리	1487-1	답	4,585	799	최항숙	전라북도 군산 시 옥서면 옥봉 리 56-27				
14	옥서면 옥봉리	1656-11	답	487	487	국	기획재정부				
15	옥서면 옥봉리	1489-3	답	3,802	254	길은영	군산시 나운 동 100-11 롯데 3차a 207-1003				

16	옥서면 옥봉리	1676-2	천	53	53	국	농림수산식품부				
17	옥서면 옥봉리	1490-2	답	3,014	2	김무식 외2	충남 당진시 합덕읍 미락4길 26, 503호(제이 하우스)	서울보증 보험(주)	서울종로 구연지동 136-74(중 부신용지 원단)	가압류	
18	옥서면 옥봉리	1492-6	대	53	46	이완세	전라북도 군산 시 옥서면 옥봉 리 1313-22				
19	옥서면 옥봉리	1492-5	대	145	69	이완세	전라북도 군산 시 옥서면 옥봉 리 1313-22				
20	옥서면 옥봉리	1492-4	대	149	39	이완세	전라북도 군산 시 옥서면 옥봉 리 1313-22				
21	옥서면 옥봉리	1492-3	대	182	8	김무식 외3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1096 이안a 102-202	한국무역 보험공사	서울종로 구서린동 136	가압류	
22	옥서면 옥봉리	1676-4	천	625	216	국	농림수산식품부				
23	옥서면 옥봉리	1798	도	97	73	국	농림수산식품부				
24	옥서면 옥봉리	1775-8	답	3,867	26	전재권	전라북도 군산 시 옥서면 옥봉 리 74-48				
25	옥서면 옥봉리	1797	구	3,017	1,373	국	농림수산식품부				
계					8,571						

##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 물건	편입량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옥서면 옥봉리	1492-5	축사	179.1	군산시 옥봉리	변동만	

군산시 고시 제2015-53호

##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 3. 23

군산시장 (인)

주 소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성명(법인명)	군산시장		
하 천 명 칭	탐천	하 천 등 급	지방하천
점 용 장 소 점 용 목 적	전북 군산시 대야면 965번지 일원 삼라교 재가설에 따른 하천점용		
점 용 면 적	1,030㎡(영구)		
최 초 허 가 일	2015년 3월 23일		
점 용 기 간	2015년 3월 23일 허가일로부터 ~ 영구		

군산시 고시 제 2015 - 57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3. 31.

##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군산 미장지구 A-1BL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가) 명 칭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나) 대표이사 : 이창희
  - 다)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12층 (대치동, 신안빌딩)
3. 사업내용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미장지구 A-1블록
  -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 나. 대지면적 : 24,114.5200m<sup>2</sup>
  - 다. 건축면적 : 5,004.2943m<sup>2</sup>
  - 라. 연 면 적 : 78,176.1009m<sup>2</sup>
  - 마. 건축규모 : 아파트 7동 16~25층, 540세대
    - 전용 74.9925m<sup>2</sup> 188세대
    - 전용 74.9930m<sup>2</sup> 15세대
    - 전용 74.9849m<sup>2</sup> 72세대
    - 전용 74.9765m<sup>2</sup> 49세대
    - 전용 74.9873m<sup>2</sup> 50세대
    - 전용 101.7892m<sup>2</sup> 166세대
  -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사. 사업비 : 128,194,551천원

아. 사업기간 : 2015년 4월 1일 ~ 2017년 6월 30일

4. 설계도서 : 승인설계도서와 같음

5. 사업계획변경내용

변경내용	당초	변경
연면적 변경 - 경비원 휴게공간 반영	78,163.13m <sup>2</sup>	78,176.10m <sup>2</sup> (12.97m <sup>2</sup> 증)
74m <sup>2</sup> 단위세대 거실창 변경	거실창 2짝	거실창 3짝
101m <sup>2</sup> 드레스룸 창호 변경	1.2×1.2	0.9×1.2
74m <sup>2</sup> C형 - 거실창, 실외기실 창호 조정	-	-
단위세대 기본형 가구 도면 표시	미표기	표기
지하저수용량 변경	570톤 (매세대당 1톤)	300톤 (매세대당 0.5톤)
전기실 면적 변경	전기실 527.48m <sup>2</sup>	전기실 430.47m <sup>2</sup> (87.87m <sup>2</sup> 감)
우수저류조 위치 이동	-	-
휴게공간 디자인 및 비상차로 변경	-	-

6. 주택건설사업변경승인일 : 2015년 3월 31일


7.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 063-454-3713)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 2015-58 호

## 도로명주소(부여·변경·분할·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분할·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4. 01.

군 산 시 장 

## ○ 도로명주소 부여 : 25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략				

## ○ 도로명주소 변경 : 1건

종전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략				

## ○ 도로명주소 분할 : 1건

지번주소	종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략					

## ○ 도로명주소 폐지 :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군산시 공고 제2015-423호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5년 3월 17일

군 산 시 장

###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 · 운영

#### 1. 산불특별대책기간의 설정

가. 기간 : 2015. 3. 20 ~ 4. 20 (31일간)

나. 이유 : 연간 산불피해면적의 84%(발생건수의 51%) 및 대형산불이 3~4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음. 주로 입산자 실화(36%), 소각산불(33%) 담뱃불실화(8%) 등이 산불의 원인이므로 시민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중앙 및 지자체에서도 총력 대응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 나. 신고할 행정기관

- 1) 군산시청(산불종합 상황실 063-454-2965) 및 읍면동사무소
- 2)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등
-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다. 대표 신고전화번호 : 국번없이 119

### 3. 당부사항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발생하는 논밭두렁·농산폐기물·쓰레기 소각 등이 산불로 번져 시민 안전을 해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 여러분께서도 산불예방을 위한 깊은 관심과 참여 속에 산불로부터 산림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대책기간 중에는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가 일체 금지됩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에 가시기 전에 입산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산림청 또는 시 홈페이지나 네이버지도에서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5-450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1-6 / 옥구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공고

군산 도시계획시설( 도로 : 대로1-6 / 옥구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전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2015년 3월 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94-16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6)사업
  - 나. 명 칭 : 옥구회전교차로 설치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가. 사업면적 : 5,076 m<sup>2</sup>
  - 나. 사업규모 : 도시계획도로(회전교차로) 1식
4. 사업시행자주소 및 성명
  - 가 주 소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지
  - 나 성 명 : 군산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붙임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실음 생략
8.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9. 열람기간 : 도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10. 열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063-454-3532)
11. 관계도서는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 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총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군산	옥구	선제	96-2	도	46	46	국토교통부	국	
2	군산	옥구	선제	95-5	도	623	525	군산시	국	
3	군산	옥구	선제	93-12	도	4,213	793	전라북도	국	
4	군산	옥구	선제	94-12	도	52	52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94-3	전종한	
5	군산	옥구	선제	94-1	도	12	12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94-3	전종한	
6	군산	옥구	선제	94-6	도	42	42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94-3	전종한	
7	군산	옥구	선제	94-8	대	3	3	군산시	국	
8	군산	옥구	선제	94-16	대	334	334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94-3	전종한	
9	군산	옥구	선제	94-9	대	49	49	군산시	국	
10	군산	옥구	선제	94-13	도	136	136	군산시	국	
11	군산	옥구	선제	94-7	대	95	95	군산시	국	
12	군산	옥구	선제	94-4	대	25	25	군산시	국	
13	군산	옥구	선제	94-2	대	10	10	군산시	국	
14	군산	옥구	선제	94-10	대	238	238	군산시	국	
15	군산	옥구	선제	94-14	도	73	73	군산시	국	
16	군산	옥구	선제	517-7	대	241	217	군산시	국	
17	군산	옥구	선제	518-1	대	80	67	군산시	국	
18	군산	옥구	선제	519-3	대	35	32	군산시	국	
19	군산	옥구	선제	519-2	도	99	16	군산시	국	
20	군산	옥구	선제	519-4	잡	185	172	군산시	국	
21	군산	옥구	선제	515-10	전	186	171	군산시	국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총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22	군산	옥구	선제	514-6	답	80	41	군산시	국	
23	군산	옥구	선제	516-7	대	114	109	군산시	국	
24	군산	옥구	선제	517-8	대	25	25	군산시	국	
25	군산	옥구	선제	517-6	도	103	45	군산시	국	
26	군산	옥구	선제	516-9	도	124	8	군산시	국	
27	군산	옥구	선제	517-5	도	105	56	군산시	국	
28	군산	옥구	선제	517-3	도	99	99	군산시	국	
29	군산	옥구	선제	516-2	도	215	36	전라북도	국	
30	군산	옥구	선제	517-10	도	91	85	군산시	국	
31	군산	옥구	선제	796-1	도	7,263	524	국토교통부	국	
32	군산	옥구	선제	94-11	도	12	12	군산시	국	
33	군산	옥구	선제	98-6	도	53	32	국토교통부	국	
34	군산	옥구	선제	98-4	도	79	79	국토교통부	국	
35	군산	옥구	선제	98-43	대	84	3	군산시	국	
36	군산	옥구	선제	98-5	도	13	10	국토교통부	국	
37	군산	옥구	선제	97-1	도	608	608	전라북도	국	
38	군산	옥구	선제	98-21	도	17	17	국토교통부	국	
39	군산	옥구	선제	98-1	도	13	13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임기섭	
40	군산	옥구	선제	98-2	도	149	149	국토교통부	국	
41	군산	옥구	선제	98-23	도	7	7	국세청	국	
42	군산	옥구	선제	98-22	도	10	10	국세청	국	
계						16,041	5,076			

##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연번	지장물 소재지				편입물 건	편입량	면적 (㎡)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주소	성명	
1	군산	옥구	선제	94-16	사무실	1동	58.93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94-3	전종한	
2	군산	옥구	선제	94-16	비닐 하우스	1동	54.0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94-3	전종한	
3	군산	옥구	선제	94-16	감나무	8주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94-3	전종한	

군산시 공고 제 2015 - 460호

## 2015년 통합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

2015년 산림정책에 의거 추진하는 2015년 통합숲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해당 임야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대상지 선정 통보 및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산주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3.

군 산 시 장 (인)

1. 사업명 : 2015년 통합숲가꾸기사업
2.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증대시켜 쾌적하고 각종 재해에 강한 산림을 가꾸고자 함.
3. 지 적 : ha
4. 사업면적 : 50ha
5. 사업내용 : 천연림보육개량, 숲아베기(간벌),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임내정리 등
6. 사업대상 : **붙임 필지별 조서 참조**
7. 사업기간 : 2015. 04. ~ 06.
8. 공고기간 : 2015. 03. 23. ~ 2015. 04. 17.(20일간)
9. 공고에 따른 조치 사항 :
  - 가. 공고기간 중 대상지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 동의여부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 나. 위 공고기간까지 이의가 없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에게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0. 기타사항 : 사업대상지·내용 및 면적은 향후 사업추진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통합숲가꾸기사업 대상지내역 열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군산시 산림녹지과 보호계(063-454-2962,454-29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15년 통합숲가꾸기사업 대상지 내역 1부.

필지별소유자목록

임소반	대상지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주소	성명	
1-0-1	군산	금동		9-1		국유지	
	군산	금동		9-2		국유지	
	군산	금동		9-3		국유지	
	군산	금동		9-4		국유지	
	군산	금동		9-53		국유지	
	군산	금동		28-4		군산시	
	군산	금동		28-17		국유지	
	군산	금동		28-12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608-8	구*근 (추*엽)	동
	군산	금동		35-20		국유지	
군산	금동		35-21		국유지		
소반계				10필지			
2-0-1	군산	소룡동		산 120		군산시	
소반계				1필지			
2-0-2	군산	소룡동		산 120		군산시	
	군산	나운동		1072-1	군산시 미원동 11	고*만	
	군산	나운동	산	68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020	황*원	
	군산	나운동	산	71		국유지	
	군산	나운동	산	76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림로 48번길 31, 401호(하기동)	심*	
	군산	나운동	산	77	인천 남구 주안동 14-42	이*국	동3/16
	군산	나운동	산	78	인천 남구 주안동 14-42	이*국	동3/16
군산	나운동	산	80		군산시		
소반계				8필지			
3-0-1	군산	임피면	보석리	산 114	김제군 백구면 부용리 307	김*수	
	군산	임피면	보석리	산 127	익산시 동산동 1057 세계@ 4/307호	송*의	
	군산	임피면	보석리	산 129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491	박*로	
	군산	임피면	보석리	산 131	옥구군 임피면 보석리 488	이*효	동/3.10
	군산	임피면	보석리	산 132	경남 마산시 문화동 2-2 한아름아파트 602	구*렬	
	군산	임피면	보석리	산 133-1	옥구군 임피면 보석리 438	조*남	
3-0-1	군산	임피면	보석리	산 133-2	옥구군 임피면 보석리 438	조*남	
	군산	임피면	보석리	산 137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587-79	전*규	
	군산	임피면	보석리	산 138	군산시 조촌동 764-1	박*자	
	군산	임피면	보석리	산 138-1	군산시 조촌동 764-1	박*자	
	군산	임피면	보석리	산 139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709	정*일	
	군산	임피면	보석리	산 141	옥구군 임피면 보석리 488	이*효	
	군산	임피면	보석리	산 142-3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80-3 백설마을삼환@ 517/1205	이*용	
	군산	임피면	보석리	산 142-5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702-1	이*풍	
	군산	임피면	보석리	산 142-6	옥구군 대야면 산월리 372	지*석	
	군산	임피면	보석리	산 170	서울 중랑구 망우동 509-91	이*구	
군산	임피면	보석리	산 171	군산시 나운동 831주공2@9/406	김*규		

	군산	임피면	보석리	산	172	군산시 서흥남동 375	이*식	
	군산	임피면	보석리	산	173	익산시 중앙로21길 5(마동)	이*경	
	군산	임피면	보석리	산	174	익산시 남중동 540-22	이*래	동3.12
	군산	임피면	보석리	산	184	군산시 나운동 156-6영창@101/603	이*효	
	군산	임피면	보석리	산	185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고운로 68,602호	구*렬	동/3.16
	군산	임피면	보석리	산	253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8 문촌마을 607/502	고*곤	
	군산	임피면	보석리	산	253-1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8 문촌마을 607/502	고*곤	
	군산	임피면	보석리	산	273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	전***저 축은행	동/3.11
	군산	임피면	보석리	산	276-1	옥구군 임피면 보석리 486	박*규	
	군산	임피면	보석리	산	276-2	옥구군 임피면 보석리 486	박*규	
	군산	임피면	보석리	산	282	익산시 어양동 493-7현대 @101/1103	박*규	
	군산	임피면	보석리	산	283	익산시 남중동 143-5	오*환	
	군산	임피면	보석리	산	295-4	군산시 경암동 609-89	이*일	
	군산	임피면	보석리	산	298	옥구군 개정면 통사리 282-1	양상영	
소반계					31필지			
4-0-1	군산	성산면	고봉리	산	25-3	옥구군 성산면 고봉리 15	전주**정 의대부기계 부정공종중	
소반계					1필지			
5-0-1	군산	개정면	발산리	산	50-1	군산시 나운동 155 나운세경 @207/908	김*수	
	군산	개정면	발산리	산	50-2	군산시 나운동 155 나운세 경@207/908	김*수	
소반계					2필지			
6-0-1	군산	나포면	장상리	산	355-12	군산시 수송동로20, 201/902	황*돈	
소반계					1필지			
7-0-1	군산	옥구읍	이곡리	산	65-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401 현대한강@ 103/805	박*희	
소반계					1필지			
8-0-1	군산	서수면	축동리	산	216-8	전주시 덕진구 술대길 49-9(송천동1가)	김*식	
소반계					1필지			
합 계					55필지			